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31

발의연월일: 2021. 5. 6.

발 의 자:도종환·송재호·이광재

이병훈 • 유정주 • 임오경

문진석 • 이상헌 • 김승원

김철민 · 김의겸 · 박 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최근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. 매일 책을 읽는 독자의 비율은 8.4%(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.2%)인 반면,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비율은 26.2%(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4.3%)로나타나 다른 OECD 국가와의 독서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에 '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(2019~2023)'(이하 '기본계획'이라 함)을 수립·발표하였는데, 책 읽는 사회를 확산시키고 개인·정서적 행위에 초점을 두었던 독서 체계를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이러한 기본계획을 통하여 앞서 제기되었던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이에 기본계획의 방향 및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으로써 독서 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독서는 행복 추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'독서권'을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'독서동아리'를 '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'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'독서경영'을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,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마.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바.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.
- 사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아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

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- 자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 ·군·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- 차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- 카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 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,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 록 함(안 제18조).

법률 제 호

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건전한"을 "건강한"으로, "평생 교육의"를 "사회적 독서 및 평생 학습의"로, "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"을 "평등한 독서권을"로 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·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"독서권"이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4. "독서동아리"란 다수의 사람이 모여 독서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말한다.
- 5. "독서경영"이란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,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기업 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"를 "제1항에 따른 평등한 독서

권 보장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"로 한다.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협의하여"를 "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"로, "수립하여 시행"을 "수립·시행"으로 한다. 제3장(제7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독서문화진흥위원회

- 제7조(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립) ①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
 - 2. 기본 계획의 수립 · 변경 및 평가
 - 3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
 - 4. 책읽는도시의 지정・갱신
 - 5. 책의 해 지정
 - 6.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 - ② 위원회는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수 있다.
- ④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"진흥"을 "문화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진흥에"를 "문화 진흥에"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"진흥"을 "문화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독서 모임"을 "독서 동아리"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"진흥"을 "문화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독서 모임을"을 "독서 동아리를"로, "그 모임의"를 "독서 동아리의"로 한다.

제12조를 제17조로 하고,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, 제4장에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독서동아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

다.

- 제13조(독서경영기업 등 인증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 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 -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4조(인증의 취소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제13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5조(책읽는도시 지정제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책읽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

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책읽는도시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갱신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읽는도시의 지정, 신청 및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책의 해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책의 해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(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 외인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 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독서소외인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
 - 2.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

- 3.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4.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연구 및 통계 작성
- 5.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장(제2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벌칙

- 제2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
 - 2.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독서 문화의	제1조(목적)			
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				
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				
상하고 <u>건전한</u> 정서를 함양하	<u>건강한</u>			
며 <u>평생 교육의</u> 바탕을 마련함	<u>사회적 독서 및 평생 학습의</u>			
으로써,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				
고 국민의 <u>균등한 독서 활동</u>	<u>평등</u>			
<u>기회를</u>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	한 독서권을			
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				
으로 한다.		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	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2. "독서권"이란 문자를 사용하			
	여 표현된 것을 자유롭게 읽			
	<u>을</u>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			
<u>2.</u> (생 략)	<u>3.</u> (현행 제2호와 같음)			
<u><신 설></u>	4. "독서동아리"란 다수의 사람			
	이 모여 독서 자료를 함께			
	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말한			
	<u>다.</u>			
<u><신 설></u>	5. "독서경영"이란 독서를 통하			
	여 얻은 지식과 정보, 아이디			

3. • 4. (생략)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<신 설>

① (생략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(이하 "기본 계획"이라 한 |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------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 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직 무역량 강화 및 기업의 생산 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.

6. • 7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 장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
항에 따른 평등한 독서권 보장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 시행에-----

제5조(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)

-----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

-----수립·시행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<신 설> 제3장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립)
제7조(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립)
①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2. 기본 계획의 수립・변경 및 평가

- 3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
- 4. 책읽는도시의 지정・갱신
- 5. 책의 해 지정
- 6.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,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제8조(독서 교육 기회 제공)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 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의 독서 <u>진흥</u>) ①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<u>진</u> 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 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학교의 독서 <u>진흥</u>) ①·② (생 략)

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<u>독서 모임</u> 의 운영 장려, 학교 도서관의 설치·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 다.

④ • ⑤ (생 략)

0	위	촉하고,	위	원장은	위원	중
에 /	서	호선한대	구.			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제	9조(지역의 독서 <u>문화 진흥</u>) ①
	- <u>문화 진흥에</u>
	② (현행과 같음)
제	10조(학교의 독서 <u>문화 진흥</u>)
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	3
	<u>독서 동아</u>
	린
	④·⑤ (혀해과 같음)

제11조(직장의 독서 <u>진흥</u>) ① (생 제11조(직장의 독서 략) ① (현행과 같음)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<u>독서 모임을</u> 두 도록 장려하여야 하며, <u>그 모임</u> 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#11조(식상의 독서 <u>문화 신응</u>)
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독</u> 서 동아리를-
<u>독서</u>
<u>동아리의</u>

제12조(독서동아리)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독서동아리 활동 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독서동아 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 서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 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독서경영기업 등 인증) ①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도 공공기관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

<신 설>

-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 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.
- 제14조(인증의 취소)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 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2. 제13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

<신 설>

경우

제15조(책읽는도시 지정제 등) ①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독
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
여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
다. 이하 같다)를 위원회의 심
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
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책읽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. 이하 같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책읽는도시로 지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 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갱신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읽는도시의 지정, 신청 및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제16조(책의 해 등) ① 문화체육</u> <u>관광부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</u> 에 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

<신 설>

<u>제12조</u>(독서의 달 행사 등) (생략) <신 설> 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책의 해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<u>제17조</u>(독서의 달 행사 등) (현행 제12조와 같음)
- 제18조(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 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을 보장하 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 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 서소외인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독서소외인의 독서 <u>활성화를</u> 위한 계획의 수립·시행
 - 2.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
 - 3.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제13조(관계 기관과의 협력) (생 략)

(생 략)

제15조(연차 보고)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4.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연 구 및 통계 작성

5.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

제19조(관계 기관과의 협력) (현 행 제13조와 같음)

제14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제20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(현행 제14조와 같음)

> 제21조(연차 보고) (현행 제15조 와 같음)

> 제2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 서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장 벌칙

제2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
부과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 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

 인증을 받은 자
- 2.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 다.